

1. 개정이유

국민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취미·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 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95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드론공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두각을 보이는 드론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사업자 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드론공원 지정·변경신청 등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별지 제1호서식)

시·도지사등이 드론공원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공원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변경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구체화하며, 드론공원 이용자에 대한 조종자증명 특례범위를 4종(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으로 한정

나. 우수사업자 지정 세부기준 마련(안 제5조제2항)

우수사업자 지정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신설

다. 우수사업자 지원사항 확대(안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드론 인프라 또는 시설의 우선 입주 및 국토교통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우수사업자 지정취소 세부요건 신설(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지정취소 요건을 지정기준 미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드론사용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제품 등 불만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지정취소 시 청문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드론공원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드론공원 지정(변경)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4호에 따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5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드론공원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2. 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제7호에 따라 구축된 드론 인프라 또는 시설 등의 우선 입주 또는 사용

6. 그 밖에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를 “제16조제4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드론사용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관련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4. 우수사업자의 제품, 서비스 등 이용자 불만사항 및 드론사고 예방·대응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드론공원 지정(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	------	-------------

신청 기관	명칭	전화번호
	주소	

신청 (변경) 내용	드론공원 명칭	
	입지개요 (위치·면적)	
	주요시설 종류·규모	
	공역현황	
	활용방안 (용도 등)	
	변경사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드론공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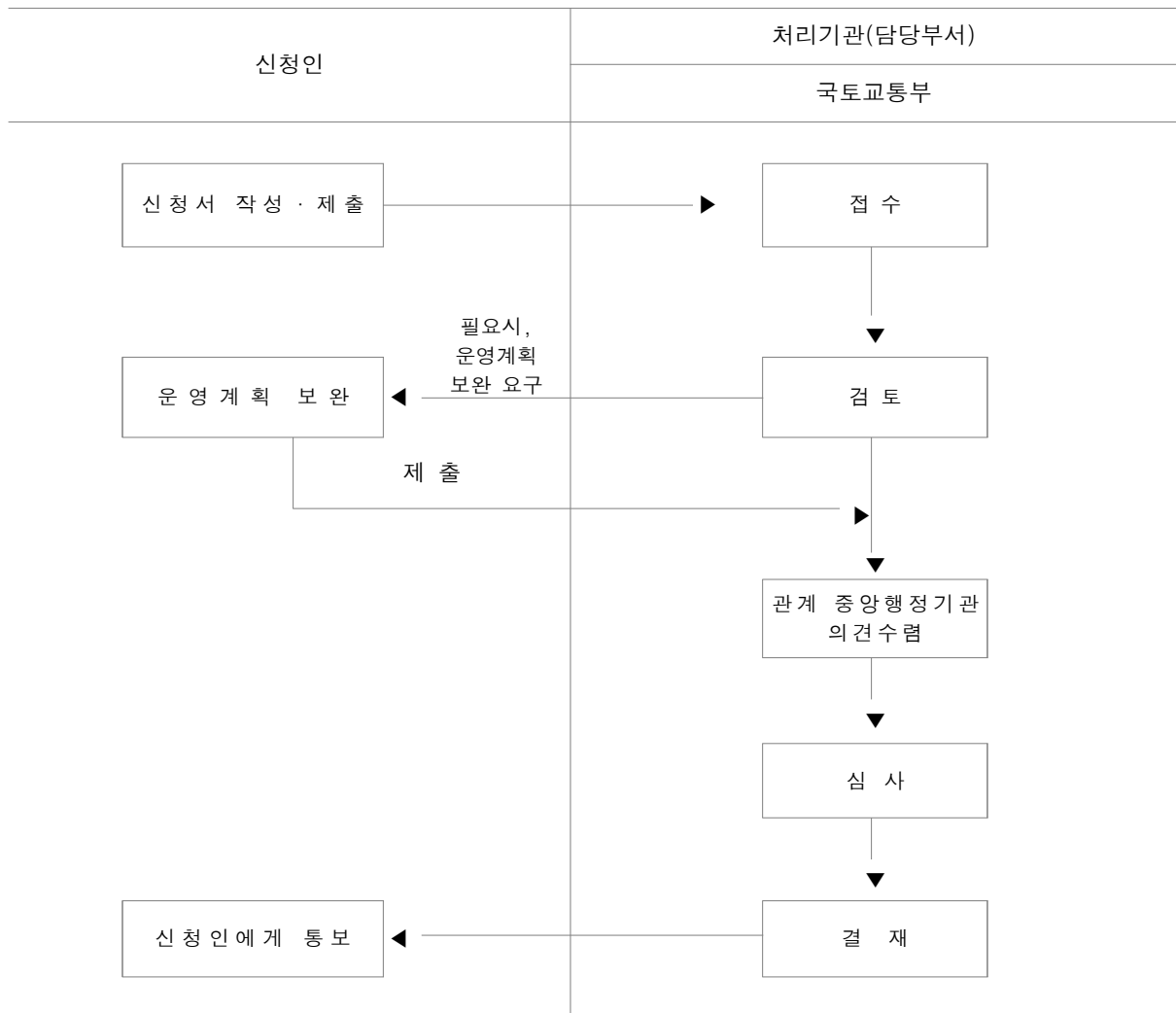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1. 드론공원 운영계획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드론공원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드론공원 지정(변경)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4호에 따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u> <u>③ 법 제11조의2제5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드론공원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u> <u>2. 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변경하는 경우</u>
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 (생략) <u><신설></u>	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
제6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생략)	제6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 1. ~ 4. (현행과 같음) <u>5.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제7호에 따라 구축된 드론 인프라 또는 시설 등의 우선 입주 또는 사용</u> <u>6. 그 밖에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취소 등)
<신 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4
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의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
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
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드론사용사업을 하
지 않은 경우

3.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초경
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관련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4. 우수사업자의 제품, 서비스
등 이용자 불만사항 및 드론
사고 예방·대응 등에 대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
우

② ----- 제16조제4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 문을 해야 한다.	는 ----- -----.
---------------------------------------	---------------------------